'24-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

2024. 03. 08.(금)

소림 /박진선 /2024-03-08 12:39

산 학 협 력 단

순 서

❑ 관련근거 설명

❑ 심의내용 설명 및 심의·의결

○ 의제 #1 : '24년도 산학협력단 예산편성(안)

○ 의제 #2 : 연구비 관리지침 규정 개정

소림 /박진선 /2024-03-08 12:39

❑ 의결 결과 발표

관 련 근 거

❑ 의제 #1 관련근거

○ 산학협력단 규정

가. 산학협력단 정관 제4장 제20조 (회계의 운영)

- 제2항 : 회계연도마다 **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안을 편성**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하고, 위원회는 10일 전까지 이를 **심의·확정**
- 제3항 : 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된 **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안은 학교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**

나. 산학협력단 정관 제22조 (지출)

- 산학단의 관리·운영비, 산학협력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
-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
- 그 밖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

다. 산학협력단 운영예규 제3조 (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임무)

- 교수의 연구활동에 관한 육사에 대한 협력 및 지원
- 그 밖에 육사의 대외수탁 연구 등 산학연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육군사관학교 교장의 지시가 있는 사항

❑ 의제 #2 관련근거

○ 산학협력단 규정

가. 산학협력단 정관 제3장 제15조 (위원회의 기능)

제1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의 기획 · 조정
2. 산학협력단의 예 ·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**정관 및 산학협력단 업무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**
5.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❑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

○ 구성

구 분	구 성	
	당연직	임명직
위원장	(1) 산학협력단장	
위원	(2) 화랑대연구소장 (3) 교학처장 (4) 학교본부 교무기획실장	(5) 교수부 인문과학처장 (6) 교수부 사회과학처장 (7) 교수부 이학처장 (8) 교수부 공학처장 (9) 교수부 교수학습지원처장
간사	산학협력팀장	

○ 기능 :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

- 산학협력의 기획·조정
- **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**
-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**정관 및 산학협력단 업무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**
-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○ 심의 절차

- **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**으로 개회
- **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**으로 의결
- 의결된 안건은 학교장 승인 후 발효

2023 회계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

❑ 과제 유형별 수행 현황

구분		계속과제		신규과제		합계	
용역 과제	민간	7	2	28	8	35	10
	정부부처 산하기관		5		20		25
국가R&D 과제		19		18		37	
합계		26		46		72	

❑ '23년도 신규과제 협약금액

구분		계약건수	계약금액
용역 과제	민간	8	1,157,014,378
	정부부처 산하기관	20	858,562,980
국가R&D 과제		18	3,204,752,450
합계		46	5,220,329,808

❑ '23년도 신규과제 협약기관

구분		협약기관	과제수	협약기관	과제수
용역 과제	민간	한화 에어로스페이스	2	옵티머스시스템	1
		한화시스템	2	쌍용정보통신	1
		LIG nex 1	1	포멀웍스	1
	정부부처 산하기관	합동참모본부	1	국방대학교	2
		육군본부	3	국방기술진흥연구소	1
		화학물질안전원	2	국방과학연구소	5
		한국가스안전공사	1	국립외교원	1
		차세대전쟁연구소	1	경기주택도시공사	1
		국방시설본부	1	한국과학기술원	1
국가R&D 과제		국방과학연구소	1	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	1
		국방기술진흥연구소	1	한국과학기술연구원	1
		국방기술품질원	1	한국연구재단	9
		민군협력진흥원	4		

의제 #1 : '24년도 산학협력단 예산편성(안)

❑ 개 요

2024년도「산학협력단 예산편성(안)」에 대한 심의·의결임.

❑ '24년 산학협력단 예산편성

○ 방침

- 교육부 회계연도에 따라 '24년도 예산편성(2023.3.1.~2024.2.28.)
- 예산편성은 정부·군·기업의 연구용역 충족과 연구과제 수주지원 및 연구비 집행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
- 예산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, 각 사업이 적시·적기에 집행

○ 예산 항목 구성

-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으로 구성
- 산학협력 관련 수익 및 지출(용역과제)
- 지원금 관련 수익 및 지출(국가R&D과제)
- 간접비 수익 및 지출
- 운영외 수익 및 지출

과 목	비고
Ⅰ. 현금유입액	
1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	
1)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	용역과제 연구비 수익 (간접비 제외)
2)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	R&D과제 연구비 수익 (간접비 제외)
3)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	용역 및 R&D과제 간접비 수익
4)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	이자 수익

과 목	비고
Ⅱ. 현금유출액	
1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	
1) 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	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(직접비 + 부가세)
2) 지원금사업비 현금유출액	R&D과제 연구비 집행 (직접비 + 부가세)
3) 간접비사업비 현금유출액	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
4) 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	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 운영외 예비비

Ⅲ. 현금의 증감(Ⅰ-Ⅱ)	현금유입액(I) - 현금유출액(II)
Ⅳ. 기초의 현금	'23 회계연도 기말의 현금
Ⅴ. 기말의 현금	기초의 현금(IV) + 현금의 증감(III)

○ 현금 유입액 판단

- 산학협력(용역과제) 및 지원금(국가R&D과제),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
  - **'20~'23년 결산금액 평균의 10% 증액된 금액**으로 판단
- 간접비 수익 현금유입액 : **과제 유형별 간접비율 적용**
  - 산학협력 수익 중 정부부처 산하기관 과제 : 6%
  - 산학협력 수익 중 민간기관 과제 : 30%
  - 지원금수익 : 5%('24.2.28. 이전), 9.98%('24.2.29. 이후)

※ '24 회계연도부터 육군사관학교의 R&D과제 간접비고시비율은 9.98%로 인상
'24 회계연도 지원금 수익 중 신규 과제 비율을 30%로 가정하여 계산

- '24 회계연도 현금 유입 예산(안)

과 목 (항 목)	당기 (2024년)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
Ⅰ. 현금유입액	2,819,549,316	3,501,027,201	2,263,244,202	1,499,247,122	2,567,219,055
1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	2,819,549,316	3,501,027,201	2,263,244,202	1,499,247,122	2,567,219,055
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	**1,569,312,962**	1,574,498,757	1,550,461,801	909,460,025	1,672,172,005
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	**1,001,616,112**	1,725,958,525	596,473,619	499,556,975	820,251,287
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	**247,423,183**	199,773,705	115,195,122	89,086,066	73,496,750
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	**1,197,059**	796,214	1,113,660	1,144,056	1,299,013

○ 현금 유출액 판단

- 산학협력비 및 지원금사업비 현금 유출액
  - '23년도 산학협력 및 지원금 수익 대비 집행비율 저조

※ 사유 : '23년도 다년 과제 다수 협약으로 인한 선급금 과다 입금

  - '24년도 현금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
  - '24년도 현금 유출액 : **예상 현금 유입액의 90% + '23년도 집행 잔액**

		산학협력(용역과제)	지원금(R&D과제)	합계
'23년도	수익	1,574,498,757	1,725,958,525	3,300,457,282
	집행	1,082,262,626	1,158,251,735	2,240,514,361
	집행율	68.7%	67.1%	67.9%
	잔액	492,236,131	567,706,790	1,059,942,921
'24년도	현금 유출액	**1,904,617,797**	**1,469,161,290**	

- 간접비 사업비 및 운영 외 비용 현금 유출액
  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편성 [별첨 #1]
  - '24년 간접비 및 운영 외 비용 세부사용계획 [별첨 #2]
  - 사용계획 요약

구 분		금 액	비 율	비 고
간접비 사업비	인건비	76,445,023	42.1%	산학단 직원 고용
	연구개발 능률성과급	14,000,000	7.7%	연구협약 및 학술활동 인센티브
	산학단 운영비	30,124,000	16.6%	산학단 운영 경비
	기관공통비용	15,211,600	8.4%	세금 및 수수료
	연구활동지원	33,636,000	18.5%	연구행정 지원비용
	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	8,000,000	4.4%	특허 출원·등록·유지
	소계	**177,416,623**		
운영 외 비용	업무 예비비	4,000,000	2.2%	예비비
	소계	**4,000,000**		
총 예산		**181,416,623**	**100%**	

※ '24.2.29. 기준 간접비 적립금 : 315,876,495원

○ '24년 현금예산서 : 2024.3.1. ~ 2025.2.28.

(단위 : 원)

과 목 (관 항 목)	비고
Ⅰ. 현금유입액	2,819,549,316
1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	2,819,549,316
1)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	1,569,312,962
2)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	1,001,616,112
3)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	247,423,183
4)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	1,197,059

과 목 (관 항 목)	비고
Ⅱ. 현금유출액	3,555,195,710
1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	3,555,195,710
1) 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	1,904,617,797
2) 지원금사업비 현금유출액	1,469,161,290
3) 간접비사업비 현금유출액	177,416,623
4) 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	4,000,000

Ⅲ. 현금의 증감(Ⅰ-Ⅱ)	-735,646,394
Ⅳ. 기초의 현금	1,932,931,335
Ⅴ. 기말의 현금	1,197,284,941

❑ 간접비 사업비 관련 주요 변동사항

○ '23년 대비 간접비 편성액 변화 (23년도 편성액 대비 +28,422,551원) [별첨 #3]

구 분	23년 편성액	23년 집행액	24년 편성액
간접비 사업비	152,994,072	130,843,558	181,416,623

○ 산학단 직원 고용비 증가 (23년도 대비 +2,230,551원)

구 분	24년	23년	증 감
기본급 + 수당	63,831,858	62,293,920	1,537,938
4대보험	6,447,304	5,869,392	577,912
퇴직적립금	5,305,861	5,191,160	114,701
건강검진비	860,000	860,000	0
계	**76,445,023**	**74,214,472**	**2,230,551**

- '23년도 대비 최저시급 2.5% 인상(9,620원 → 9,860원)
- '24년도 회계담당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급여 인상(3,368,498)
- '23년 10월 계약담당 신규 채용으로 인한 고용비 일부 감소

○ 폐지 사업

- 연구중점교수 지원비 (-4,500,000)
- 신임교수 명함 제작 (-1,500,000)
- 연구윤리심의(IRB) 지원 (-1,000,000)
-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 검토 사업 (-3,000,000)

○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

- **(신규)** 연구행정 통합 시스템 확장 구축 (+12,000,000)
  - 연구장비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확보
- **(신규)** 전자 연구노트 라이센스 구매 (+4,000,000)
  - 연구노트 작성 활성화 유도
- **(신규)** 산학협력팀장 직무수행경비 편성 (+2,400,000)
  -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(산학협력단 보수 규정 적용)
- **(증액)** 교수 학술활동지원비 (+4,000,000)
  - 연구중점교수 지원비 삭감에 따른 교수 학술활동지원비 증액
- **(증액)** 산학단 직원 교육훈련비 (+2,100,000)
  - 업무 능력 및 능률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참여

의제 #2 : 연구비 관리지침 규정 개정

(연구실 운영비)

❑ 개 요

○ 연구실 운영비 중 범용성 장비 구매에 대한 제한 규정 완화

○ 제한 규정 완화 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

❑ 관련 규정 및 개정 방안

○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

[별표 1] 연구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

7. 연구활동비

□ 사용기준

아. 연구실운영비 [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비용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유지비]

◦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(단계)종료(계속과제는 해당년도의 종료를 말한다.) 이전에 구입이 완료(기기·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)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,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.) 및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.)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에 관한 경비

◦ **범용성 장비·소프트웨어는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**

※ 범용성 장비 : PC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, 아이패드, 아이폰, 맥북, 갤럭시탭, 태블릿PC 등

※ 범용성 소프트웨어 :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

◦ **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**

❶ **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범용기자재(컴퓨터, 복사기, 카메라 등 OA기기)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한 경우**

❷ **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(모니터, 그래픽카드 등)**

❸ **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**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(2023.03.) 질의응답(Q&A)

Q1.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?

-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,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**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,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개선함**
- 따라서, **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함**
- 다만,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 또는 **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**함

○ 개정 취지

- 現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은 영리기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
-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규정에 반영 필요

❑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개정(안)

[별표 1] 연구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

7. 연구활동비

□ 사용기준

아. 연구실운영비 [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비용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유지비]

◦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(단계)종료(계속과제는 해당년도의 종료를 말한다.) 이전에 구입이 완료(기기·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)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한다. ~~하며,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.~~) 및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.)의 구입·설치·임차·사용대차에 관한 경비

~~◦ 범용성 장비·소프트웨어는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~~

~~※ 범용성 장비 : PC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, 아이패드, 아이폰, 맥북, 갤럭시탭, 태블릿PC 등~~

~~※ 범용성 소프트웨어 :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~~

~~◦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~~

~~❶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범용기자재(컴퓨터, 복사기, 카메라 등 OA기기)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한 경우~~

~~❷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(모니터, 크레픽카드 등)~~

~~❸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~~

회 의 록

❑ 주요 논의사항

구 분	내 용
의제 #1	❑ 2024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현금 예산서(안) ○ '20~'23년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 ○ 편성된 예산(안)대로 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❑ 2024 회계연도 간접비 사업비 및 운영외 비용 세부 사용계획 ○ 간접비 사업비에서 신규 임용 교수들의 초기 연구자금 지원 필요 → 현재의 간접비 규모에서 초기 연구자금 지원 제한 ○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항목에 대한 홍보/설명 필요 → 산학협력단 주요 안내내용을 정리하여 세미나 예정 ○ 우수 연구자에 대한 보상체계 확대 필요 → 능률성과급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간접비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확대 가능여부 검토 예정 ○ 연구활동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→ 산학협력단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여 안내 예정
의제 #2	❑ 연구실 운영비로 구매하는 범용성 장비에 대한 관리 대책 ○ 연구비로 구매하는 각종 장비들에 대한 관리체계 정립 필요 → 2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연구행정 통합시스템 확장을 통하여 장비 관리체계 개선 및 규정에 의한 관리 예정 ○ 연구비로 구매하는 장비들에 대한 보안대책 → 장비 반입/반출을 위한 보안절차 준수 안내